

데이터베이스 크롤링 행위의 저작권 등 침해 여부 판단 사건

(2022.5.12. 선고 대법원 2021도1533 판결, 확정)



법제지원부 김지수

주요 쟁점 경쟁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크롤링한 행위의 저작권 등 침해 여부

- 판시사항**
- ☞ (정보통신망 침해 무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API 서버에 대한 접근을 제한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의 정보통신망 침입은 인정할 수 없음.
 - ☞ (저작권법 위반 무죄) 피고인들이 수집한 데이터가 양적·질적으로 피해자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음.
 - ☞ (컴퓨터등 장애업무방해 무죄) 피고인들의 크롤링 프로그램을 이용한 접속을 부정한 명령이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들로 인하여 API 서버의 접속에 장애가 발생하여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시사점 저작권법 제93조는 개별 소재의 가치 및 생산을 위한 투자가 아닌 소재의 제작 및 갱신 등에 인적·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성과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임.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복제의 양적, 질적 부분을 모두 판단하였으며 복제의 양적 부분으로는 50개 항목 중 8개 항목이었다는 점과 질적 부분에서는 수집에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들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이미 상당히 알려진 정보와 피해자가 영업을 위해 공개할 수 밖에 없는 정보들이 복제된 것을 감안하면 저작권법 제93조에 따라 보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 심급 | 1심 (원심) | 2심 (항소심, 확정) |
|------|---|--------------|
| 당사자 | 피고인 : (주) 여기어때컴퍼니 피해자 : (주) 야놀자 | |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사건번호 | 2019고단1777 | 2020노611 |
| 선고일자 | 2020.2.11 | 2021.1.13 |
| 판결결과 | 무죄 | 유죄 |
| 관련법령 | 정보통신망법(제48조), 저작권법(제2조제20호, 제93조), 형법(제314조제2항) | |

사건의 경과

숙박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을 운영하는 업체인 ‘여기어때’는 경쟁회사인 ‘야놀자’에서 운영하는 모바일 앱이나 PC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정보를 확인하고 사내에서 이를 공유하던 중, 이러한 정보를 편리하게 크롤링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함. 이 과정에서 야놀자가 모바일 앱 이용자들에게 접속을 허용하고 있는 모바일 앱의 API¹⁾ 서버를 통하여 정보를 호출하는 명령 구문을 알아낸 후 해당 구문을 이용하여 제휴 숙박업소 업체명, 주소, 방 이름, 특정 서비스 판매 여부 등의 정보를 복제하여 수집하였음.

여기어때는 프로그램을 통한 크롤링 과정에서 회사 서버가 아닌 외부 서버를 사용했는데, 야놀자는 이러한 외부 서버를 통한 대량 호출 신호를 감지하고 해당 서버의 IP 주소를 차단하였으나 여기어때는 서버의 전원을 차단했다가 다시 켜는 방식으로 IP 주소를 변경하고 재차 크롤링을 진행하였음.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㉔ **(정보통신망 침해)** 구 정보통신망법²⁾ 제4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 규정의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범위를 설정하는 주체는 서비스제공자로,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제3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경우 그에게 접근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20.11.25. 선고 2005도870 판결) 서비스 제공자가 접근권한을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㉔ **(저작권법 위반)**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그의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이하 ‘복제 등’)할 권리를 가지며(저작권법 제93조 제1항),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는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개별 소재의 복제 등이라 하더라도 반복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함으로써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의 복제 등으로 봄.(저작권법 제93조 제2항)

㉔ **(컴퓨터등 장애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제2항에서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1) API란,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의 줄임말로 운영체제와 응용프로그램 사이의 통신에 사용되는 언어나 메시지 형식을 말함. API를 알게 되면 관리하는 서버의 위치나 데이터베이스의 흐름 등의 정보를 알 수 있어 해킹 등의 위협이 발생하므로 일반적으로 이용자들에게 공개되지는 않았음.

2) 2018.12.24. 법률 제1602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정하고 있음.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가해행위 결과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함.

2. 정보통신망법 위반 성립 여부

- ㉠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패킷캡처 프로그램”을 통하여 API 서버로부터 정보를 호출하는 명령구문을 알아내고 이 정보를 이용하여 크롤링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음. 다만 이러한 명령구문은 누구라도 간단한 기술조작이나 패킷캡처 프로그램을 통해 쉽게 알아낼 수 있는 정보이며 피해자도 별도로 앱이나 API 서버로의 접근을 막는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음.
- ㉡ 피해자는 앱의 이용약관을 통하여 앱을 통해 얻은 정보를 사전 승낙 없이 영리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였고, 자동접속 프로그램을 통하여 서버에 부하를 일으켜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으나, 이러한 약관 내용상 피고인들의 API 서버 접근권한 자체를 제한하였다고 볼 수 없음.
- ㉢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API 서버에 대한 접근을 제한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의 정보통신망 침입은 인정할 수 없음.

3. 저작권법 위반 성립 여부

-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허락 없이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의 복제 등이 되어야 하는데, 이 상당한 부분의 복제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함. 양적으로 상당한 부분인지 여부는 복제 등이 된 부분을 전체 데이터베이스의 규모와 비교하여야 하고 데이터의 질적 상당 부분 평가에는 복제된 데이터의 성질 및 통상적인 이용, 복제자의 데이터 사용 용도, 목적, 데이터 수집의 난이도, 기간의 경과,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이익, 공개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 ㉡ 피고인들이 취득한 정보는 피해자 데이터베이스 50여 항목 중에서 최대 8개 항목이며, 해당 정보들도 이미 상당히 알려진 정보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이를 수집하는데에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들었을 것이라 보이지 않는 것(숙박업소 업체명, 업체주소, 지역 등)이거나, 피해자가 영업을 위해서 공개할 수 밖에 없는 정보(할인금액, 대실가격, 숙박가격)에 해당함. 따라서 피고인들이 수집한 데이터가 양적·질적으로 피해자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4. 컴퓨터등 장애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 ㉠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API 서버를 통하여 특정 지점의 반경 1,000km 이내에 있는 모든 숙박업소 정보를 요청하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통상적인 이용 범위를 초과한

대량 호출을 발생시켜 서버 접속 중단을 유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숙박업소 정보를 전송받고자 하는 명령 자체는 API 서버의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또한, 실제 서버 접속 장애가 발생한 날이 주말, 명절 등으로 본래 접속이 많을 수 밖에 없는 일자이기 때문에 접속 횟수가 증가한 것이 자연 이용자 증가에 따른 것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인들의 크롤링 프로그램을 이용한 접속으로 인하여 API 서버의 접속에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5. 결론

☐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무죄.

시사점

법원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창작성 유무를 떠나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데 든 상당한 인적, 물적 투자를 보호하는데 취지가 있지만, 과도하게 이를 보호하게 되면 오히려 데이터 자체의 이용을 막을 수 있게 되므로 이를 막기 위해 개별 소재이거나 상당한 부분에 이르지 못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의 입법취지를 설시하였음.

또한 법원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고 있는 정보 중 이미 대중에게 공개되고 제공되고 있는 정보 또는 수집하는 데에 큰 비용이나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정보를 크롤링하여 복제 및 수집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데이터베이스의 복제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음. 빅데이터와 같은 다량으로 수집된 정보의 중요성과 가치가 점점 높아짐에 따라 기업들이 상당한 투자를 하여 자신들이 수집하고 취합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는 현 시점에서 이 판례 이후 기업들이 자사가 수집한 데이터를 대중에게 지속적으로 공개하려고 할지,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어떠한 방식으로 보호하려고 할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됨.

참고 사례

데이터베이스 크롤링 행위와 관련하여 최근 잡코리아가 자사 사이트에 등록된 채용공고를 동의 없이 활용한 사람인에이치알에 대해 진행한 민사 소송에서 법원은 사람인에이치알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음. 잡코리아에서는 사람인에이치알의 서버 접속을 금지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사람인에이치알에서는 우회로를 통하여 접속한 뒤 데이터를 가져갔기 때문에 복제된 정보가 공개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임.

이외에도 현재 네이버와 네이버 부동산 페이지에 올라온 매물 정보를 게시한 다원중개와의 민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명품 쇼핑 플랫폼인 캐치패션이 경쟁사인 발란, 머스트잇, 트레비가 무단으로 상품 정보를 활용했다고 고발을 한 사례가 있어 앞으로도 데이터베이스의 크롤링 행위에 대한 분쟁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